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8-682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시민을 위한 균린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원 내 행태 지원 및 시민이 이용하기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제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

3. 제안내용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3-2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사항
 - 공원 : 49,173.8m²

○ 위치도



4.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0. 06 : 착수보고 및 기초자료 작성
- 2020. 06 : 착수보고
- 2020. 07 : 공원조성계획 작성
- 2020. 08 : 공원조성계획 시장보고
- 2020.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도서 작성
- 2021. 02. 19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사전협의
- 2021.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 2021. 04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05 ~ 06 : 재해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09 : 의회의견 청취
- 2021. 10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21. 11 : 공원조성계획 입안
- 2021. 12 :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2. 01 : 공원조성계획 승인 고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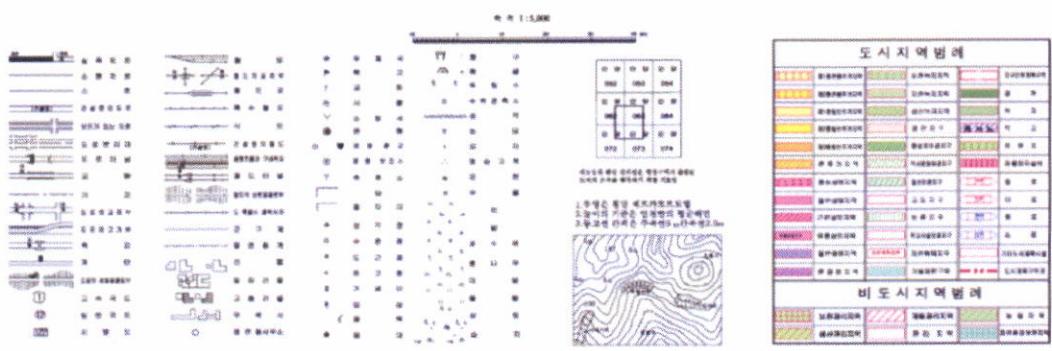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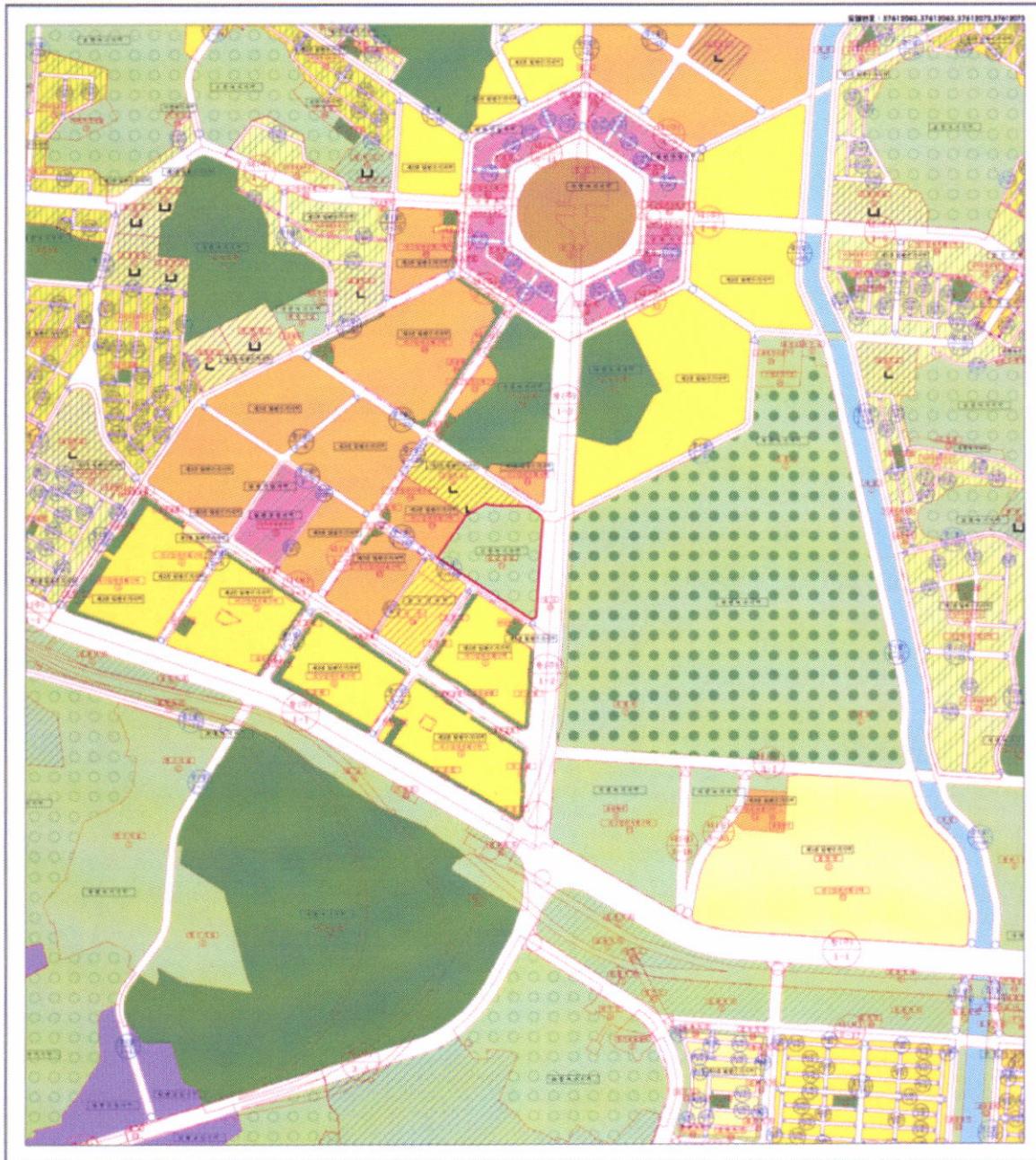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1	관모산 공원	근린 공원	단원구 초지동 603-2번지 일원		증 49,173.8	49,173.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1	관모산 공원	○ 신설 - 면적 : 49,173.8m ²	○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공원 내 행태 지원 및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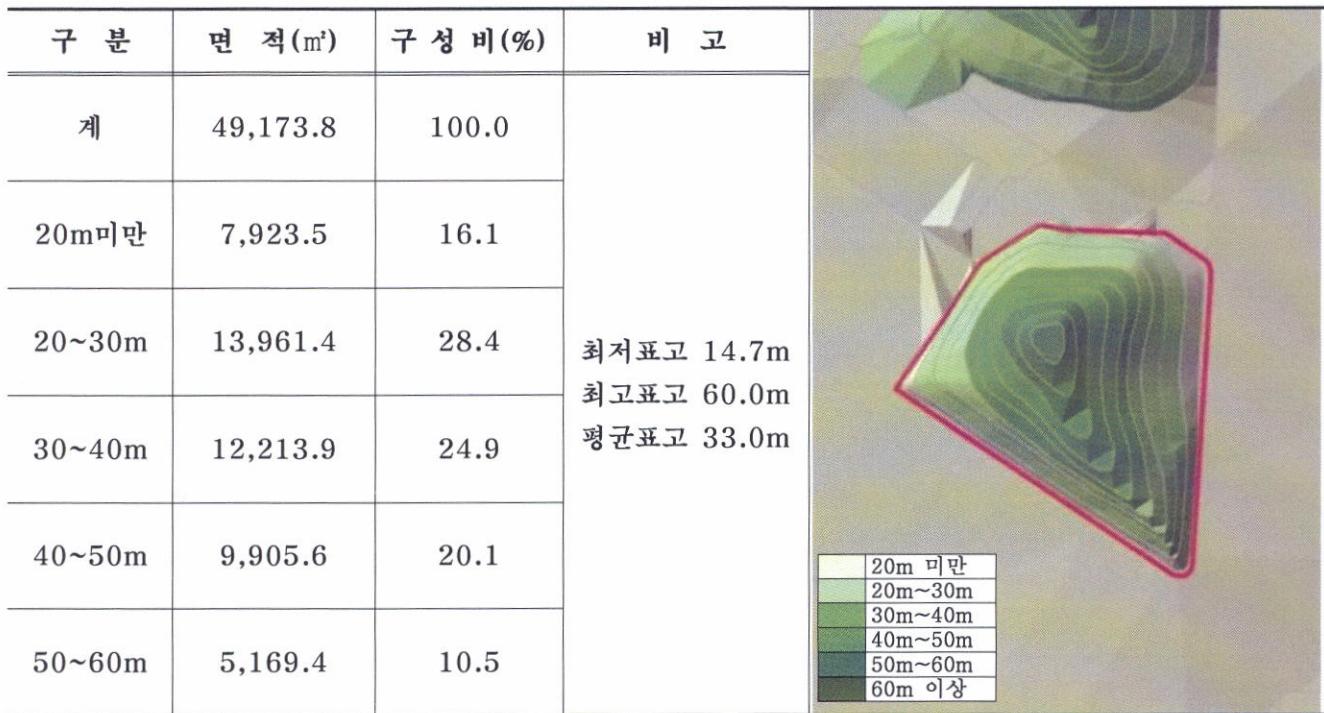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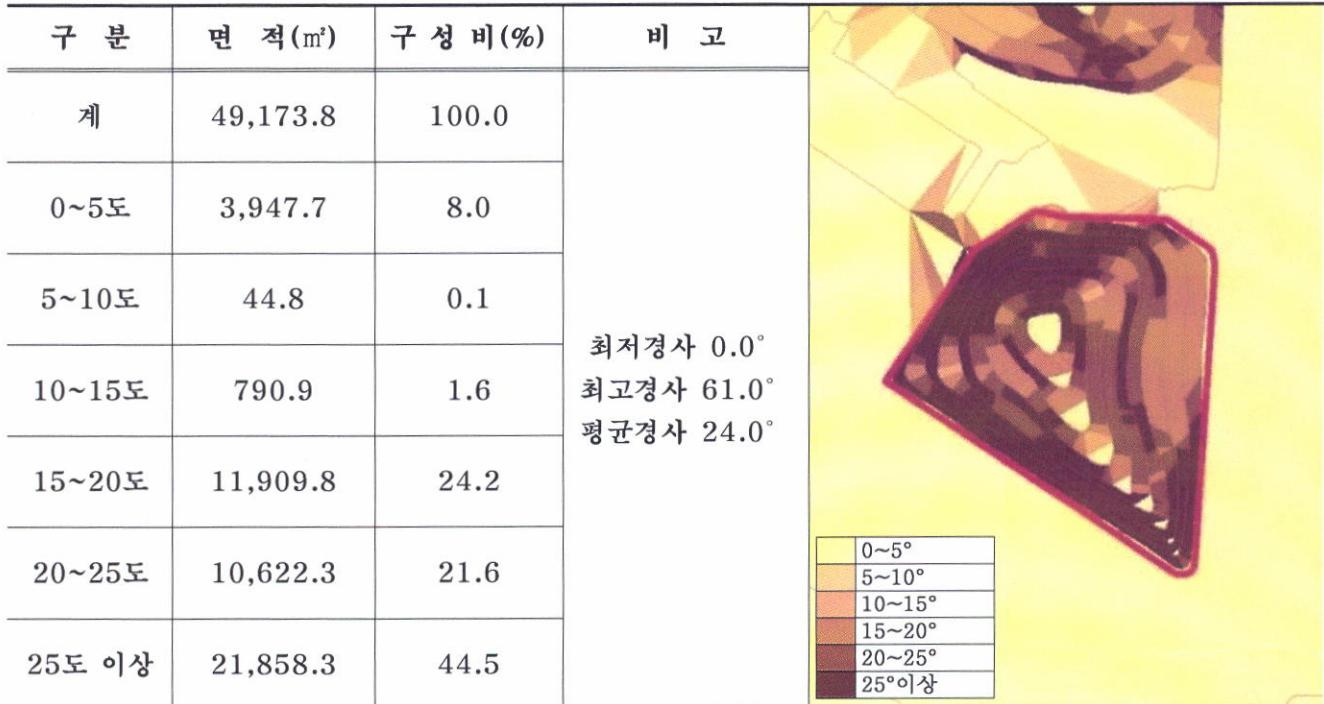
7. 대상부지 표고 및 경사분석도

○ 표고분석도



주) Arc-Gis 9.3 분석에 의한 수치임

○ 경사분석도



주) Arc-Gis 9.3 분석에 의한 수치임

8. 교통처리계획도



9. 주민공람공고 의견 및 조치계획

이름	주민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김동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화랑공원 유원지도 있고 공원이 즐비하고 사유지를 근 50 여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하고 재산세는 해마다 뺏어가고 납득할 만한 보상도 없이 안산시청에서 무단으로 탈취하는 상기 주소 토지(초지동 603-2번지 일원)의 근린공원화를 반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동, 선부동 재건축으로 인구 증가 등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공원 형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초지동 603-2번지 일원(관모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시 재정여건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과(☎481-26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반영
김연신 외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주소 토지(초지동 산62번지)의 근린공원화를 반대합니다. <p>1. 안산시는 본 소유지가 사유지임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40여년 넘게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사유지임을 명시하며 재산세를 올려 받았고, 미납 시 또 한 체납액을 득축하였습니다. 이는 안산시가 본 토지가 사유지임을 이미 입증 한다 하겠습니다.</p> <p>2. 양적인 변화보다 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안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공원이 많은 편입니다. 본 토지의 주변 1km반경 내에도 무려 10여 곳이나 됩니다.(선부광장, 선부 제1,2공원, 원곡공원, 관산공원, 조각공원, 원고잔 공원 등등) 하지만 이용객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화랑유원지를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명품화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공원의 수를 늘리기보다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선별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p> <p>3. 본 토지는 투기성 사유지가 아닙니다. 최근 ‘강남 대모산 마네킹 시위사건’처럼 투기 의혹이 있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40여년 넘게 소유하는 동안 20년 전에 화랑유원지가 설립됐고, 최근 몇 년 전에 전철역과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사유지를 보전녹지로 둑어 재산권행사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인근 주변에 의해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화합과 상생’을 외치는 안산시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동, 선부동 재건축으로 인구 증가 등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공원 형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초지동 603-2번지 일원(관모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시 재정여건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과(☎481-26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반영

이름	주민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김연신 외 3인	<p>4. 안산시는 본 토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명백히 해야 합니다. 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파른 인공계단과 둘레길, 오솔길, 안산시라고 명시된 풋말 등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시유지인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사료되는 바, 안산시는 본 토지가 사유지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5.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 된 공문을 저를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은 불과 마감일 2~3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십수년 간 주소가 여러번 바꾸어도 꼬박꼬박 날라 오던 재산세 고지서와 대조적으로 정작 재산권 행사와 관련 된 중대 사안이 적힌 공문이 17년 전 주소로 보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공무원님이 업무과가 달라서라고 하셨지만 불과 몇 달 전에 공원일몰제에 대한 고지를 현주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이번 공문만 뜬금없이 17년전 지적도상의 주소로 보내졌는지 정말 소유자의 의견수렴에 귀기울려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살맛하는 생생도시 안산을 표방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p> <p>이에 상기 주소 토지의 균린공원화에 반대합니다.</p>		

10.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기도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의는 「산지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이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 사항은 본 협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본 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의에 대한 주된 행정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경기도 산림과 및 해당시군 산지관리부서로 통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경기도 산림과 및 해당 시 산지관리부서로 통보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협의사항은 협의요청 기관에서 제출한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정하며, 고시(승인) 이전 및 이후에 본 협의사항이 변경(구역 경계, 산지전용·원형존치 구분선·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 ※ 단,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사항이 변경 될 경우 별도의 변경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실시계획인가 승인 협의시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되지 않는 산지는 산지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면적에 따라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권자와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원형보전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등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보호·관리하고, 조성녹지(조경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토수종과 우리꽃 등 자생식물로 수림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협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보전 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식재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요청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이동량은 당해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경사면의 면적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절성토 경사면 면적을 구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용되는 산지의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및 평균경사도 25도 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 - 사업실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사유출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산림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제출하고,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산지전용협의 요청 시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이동량은 최소한으로 하겠음 -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하고 구적하여 제출토록 하겠음 - 전용되는 산지 입목축적은 안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하에 해당되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 해당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이 없도록 계획 제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계획 수립하겠음 	반영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경기도 산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산지복구 대상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선 이하에서 발생하는 절성토사면(구조물 포함)에도 유효하므로 소위 건축물 지하부 아래에 대한 토목설계 시에도 반드시 적용하여 계획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산지복구 대상지는 복수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 제출하겠으며, 관련규정에 맞게 토목설계 시에도 반드시 적용하여 계획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이식 가능한 수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시 이식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는 구역 내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별채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사전에 해당시군 산지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소나무류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생산확인표 발급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이식 가능한 수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시 이식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우수한 소나무와 병든나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맞게 계획 후 사전에 해당 시 산지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실시계획인가승인 협의 시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도록 산지전용과 병행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및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토량은 가능한 사업지 내에서 전량 사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실시계획인가승인 협의 시 산지전용과 병행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농경지 및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협의조건 외 산림관계법령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관계법령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장애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사업은 장애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는 해당 법규 제2조제5호의 공원에 해당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해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단계로 추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본 사업에 대하여 의무설치 하여야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도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 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도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도록 하겠음 	반영
건축 디자인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시 경관조례 제 25조 2항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대상자는 경관심의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협의 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산림과 협의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규에 따라 경기도 산림과와 협의 하였음 - 보전산지(공익용) : 34,030m² 	반영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본 대상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실시계획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시화호특별관리해역에서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기술검討대상에 해당되기에 연안오염총량관리협의를 득하여야 함	○ 본 대상지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 시 연안오염총량관리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승인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대상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허가 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자연환경보호) 사업시행지 내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포함되어 있음. 2등급 권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 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도록 하겠음	반영
	○ (공공수역 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거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누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폐유 및 폐윤활유 등이 공공수역과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각종 장비의 폐유 및 폐윤활유 등이 공공수역과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비산먼지 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시행도록 하겠음	반영
	○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고,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사전신고 후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시행도록 하겠음	반영
	○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자원순환과 협의 후 배출자 신고 및 적정 처리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자원순환과 협의 후 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 (야생생물보호) 사업추진 시 야생생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사업추진 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도록 하겠음	반영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교통정책과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
시민안전과	<input type="radio"/> [관모산 공원(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 후 협의(심의) 요청 하시기 바람	<input type="radio"/>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 후 협의(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음	반영
수도시설과	<input type="radio"/> 상수도 공급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시 세부적인 상수계획에 대해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input type="radio"/> 실시계획 시 세부적인 상수계획에 대해 수도시설과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하수과	<input type="radio"/> 단원구 초지동 603번지 일원의 안산도시관리계획(관모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건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하수(우·오수)처리계획(관련도면 및 우수의 경우 해당 유역의 하수발생량 등)을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input type="radio"/>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하수(우·오수)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2.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 중 대상부지 사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반대의사가 다수 발생한 상태로, 도시계획과와 공원과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 실시계획 수립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용 주체인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